탄 원 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 관한 상고심 무죄 요청 시민 탄원서

수 신 대법원 해당 형사재판부 귀중
피고인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장·KTV 원장)
사 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번호 2026도15988
탄원 취지 형법 제123조의 법리 재검토와 법률상 사유가 인정될 경우 무죄 취지 판단 요청

존경하는 대법관님들께.

저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서, 이미 내려진 판결의 무게를 존중하면서도 한 사람의 형사책임을 정하는 법률상 경계만큼은 끝까지 신중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라는 시민의 마음으로 이 탄원서를 올립니다. 저는 피고인과 개인적인 친분을 내세우지 않으며, 재판 기록 전체를 직접 읽었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시민으로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비판받을 수 있는 직무상 결정과 형법이 처벌하는 범죄가 언제나 같은 것은 아니므로, 오직 인정된 사실과 적용 법리에 따라 판단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제1심은 2026년 6월 26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서울고등법원은 같은 해 9월 30일 피고인과 특별검사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에 비판적인 방송 자막을 선별적으로 삭제하도록 한 지시가 방송의 공정성·객관성을 해쳤으며, 실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판단을 단순히 지우거나, 공공방송이 져야 할 책임을 가볍게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상고심에서 살필 수 있는 법률적 의문이 남아 있다면 그 부분만큼은 엄격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1. 항소심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직권남용의 법률상 문턱을 살펴주십시오.

항소심은 KTV가 정부 정책을 알리는 기관이더라도 보도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이상 방송법상 공정성·객관성 의무와 내부 자율심의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장의 편성·운영 권한이 인정되더라도 비판적 정보를 선별적으로 배제한 지시는 본래 직무 수행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지만,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반드시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판단입니다.

한편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은 단순한 업무상 실수나 편향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일반적 직무권한의 외관 아래 그 권한을 실질적으로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대법원 2020년 1월 30일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과 2022년 10월 27일 선고 2020도15105 판결은 직무행위의 목적, 당시의 필요성·상당성, 법령상 허용 요건과 침해된 법익 등을 구체적으로 살피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디 원심이 단지 방송의 편향성이라는 결과만으로 직권남용을 인정한 것은 아닌지, 방송 편성 권한이 어떠한 법령상 목적과 제한 아래 행사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시가 그 한계를 어떤 이유로 넘었다고 평가되는지를

위 판례의 기준에 따라 충분히 설명했는지 살펴주십시오. 이는 위법한 지시를 정당화해 달라는 뜻이 아니라, 형사처벌의 기준을 정확히 적용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2. 실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결과를 지시 자체와 별도로 검토해 주십시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의 직권남용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한 결과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두 가지 결과 중 어느 하나가 인정되면 족하지만, 선택한 결과 요건이 실제로 성립했는지는 직권남용 여부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의 중요한 취지입니다.

항소심은 방송보도 담당 관리자와 편집팀장에게 스크롤뉴스 편성·운영에 관한 일정한 독자적 권한과 역할이 있으며, 원장의 지시에 따라 비판적인 자막을 삭제한 행위가 이들의 법령상 의무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직원은 상사의 지시를 따른 것뿐"이라거나 "자막 편집은 평소 업무였다"는 주장으로 이 판단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더 좁고 구체적인 법률적 확인입니다. 각 실무자의 전결권과 고유한 편집·심의 의무가 어느 법령 또는 내부 규정에서 나오는지, 그 규정이 당시 실제 삭제·수정한 개별 행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통상의 업무상 보조·보고와 직무상 원칙이나 절차를 위반한 행위가 판결에서 충분히 구분되었는지 살펴주십시오. 해당 규정과 개별 결과의 관계가 이미 충분히 판시되어 있다면 그 판단을 존중해야겠지만, 위법한 지시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원의 모든 후속 행위를 별도의 심사 없이 '의무 없는 일'로 본 부분이 있다면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짧은 통화와 실무자 논의에 관한 피고인 측 주장도 법률상 인과관계의 관점에서 검토해 주십시오.

2026년 8월 항소심 공판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 측 변호인은 직원들과 두 차례 통화한 시간이 합계 약 71초였고, 그 뒤 실제 자막 삭제까지 약 20분 동안 실무자들의 논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특정 자막을 직접 지목해 삭제를 명령한 것이 아니라 평소의 방송 기조에 따라 정치적 발언보다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편성하라고 설명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이는 피고인 측의 주장이지, 제가 진실로 확정하여 말씀드리는 사실이 아닙니다.

반면 항소심은 피고인의 지시와 그에 따른 선별적 삭제가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통화 시간이 짧았다는 점이나 중간에 직원들끼리 논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끊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원심이 인정한 통화의 구체적 내용, 직원들 사이의 논의가 지시를 그대로 구현하기 위한 과정이었는지 아니면 독립적 판단이 개입한 과정이었는지, 실제로 삭제된 항목이 지시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를 구별한 법률적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2022년 4월 28일 선고 2021도11012 판결에서는 독립된 직무권한을 가진 상대방의 판단 경위와 행위 결과 사이의 관계가 직권남용죄의 성립을 검토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물론 사안이 다른 판결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 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무진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이 실제 있었는지와 그 법률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가려, 피고인의 지시에서 비롯된 결과의 범위를 정확히 한정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4. 방송의 공적 책임과 구체적인 행위의 범위를 함께 보아 주십시오.

정부 정책을 알리는 방송이라고 해서 국민의 알 권리나 공정한 정보 전달의 책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비상계엄처럼 국민의 권리와 국가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면 그 책무는 더욱 무겁습니다. 항소심의 이러한 문제의식을 저는 존중합니다. 그러면서도 한 사람에게 형사책임을 귀속하는 단계에서는 어떤 자막이 언제 삭제되었고 그 삭제가 어떠한 지시와 연결되는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항소심은 삭제 지시와 실제 삭제가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 결의 및 뉴스특보 종료 이후 이루어진 사정, 비교적 짧은 기간의 행위, KTV의 시청률과 영향력 등을 들어 알 권리 침해의 범위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유죄 자체는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영향의 제한성을 무죄의 직접 근거로 삼아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 영향의 범위에 관한 양형 판단이 법률상 결과 요건과 혼동되지 않았는지, 각 행위에 대한 책임이 다른 시점의 방송까지 과도하게 확장되지는 않았는지 신중하게 살펴주십시오.

이은우 전 원장은 별도의 내란선전 혐의 사건에서도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두 사건에서 일부 방송행위가 겹칠 수 있더라도 각 죄의 구성요건과 심판 대상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 탄원서는 오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 관한 것이며, 다른 사건의 유무죄를 미리 단정하려는 취지가 아닙니다.

5. 감사 과정과 재판 중의 발언도 정확한 맥락에서 판단해 주십시오.

항소심은 피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단계에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으나, 재판에서는 업무상 책임을 직원들에게 미루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이 사정을 불편하다는 이유로 빼달라고 할 생각이 없습니다. 공적 권한을 행사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지시와 그로 인한 혼선을 스스로 설명하고 책임 있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만 2026년 9월 2일 항소심 최후진술에 관한 공개 보도에서는 피고인이 오랫동안 유지된 방송 기준을 따르려 했으며 그 과정의 혼선은 자신의 책임이라는 취지로 말한 내용도 전해졌습니다. 이와 감사 당시 진술, 법정에서 한 법률상 부인과 사실관계 다툼이 서로 어떤 맥락에 있었는지를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업무상 판단을 인정하는 일과 그 판단이 형법상 직권남용죄를 구성한다는 법률적 평가를 다투는 일은 반드시 같은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피고인이 이미 충분히 뉘우치고 있다고 대신 보증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론의 태도에 관한 불리한 평가가 법률상 구성요건의 증명을 대신하지 않도록, 각 판단의 위치를 구별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6. 상고심에서 심사할 수 있는 법률상 쟁점에 집중해 주십시오.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는 절차가 아니라 원심판결에 법령 위반이 있는지를 심사하는 절차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현저한 양형부당 등을 상고이유로 정합니다. 따라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단순히 사실을 다시 판단해 달라거나 형량을 낮춰 달라는 호소를 주된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전제로 하더라도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결과를 각각 올바르게 해석했는지, 방송 관련 규정과 실무자 직무범위가 법리상 정확하게 연결되었는지, 지시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률적 평가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오류가 있는지를 살펴달라는 것입니다. 만일 기록과 판결 이유에 비추어 법률상 오류가 없다면 시민의 호소만으로 판결이 바뀔 수 없다는 사실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심사 끝에 그러한 오류가 인정된다면 원심판결을 파기해 다시 법률에 따라 심리하도록 하여 주시고, 최종적으로 범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무죄의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어. 한 사람에게는 법률이 정한 만큼의 책임만 물어 주십시오.

존경하는 대법관님들.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사건에서는 그 이름이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누구에게나 무거운 평가가 따릅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까지 세상의 감정과 같은 방식으로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공직자의 잘못에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것과, 형벌을 부과할 때 법률상 요건을 한 치도 넘어서지 않는 것은 모두 법치주의를 지키는 일입니다.

저는 재판 기록의 전부를 확인하지 못했기에 특정 증거가 없다고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잘못을 덮어달라는 부탁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원심판결에 법률적 의문이 남아 있다면 그 의문을 충분히 검토해 주십시오. 그 결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될 수 있도록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바로잡아 주시기를 정중히 탄원드립니다.

한 사람의 명예와 삶, 그리고 법이 지켜야 할 기준을 함께 생각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탄원인 성명 _____

주 소 _____

연 락 처 _____ 서명(인) _____ 생년월일: _____

대법원 해당 형사재판부 귀중